전주첨단 라송 센트럴카운티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변경**
2009년 4월1일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안내**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금융결제원(국민은행 포함)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 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재당첨 및 전매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지방공공택지에 분양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자는 앞으로 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 당첨자의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이 되는자, 기당첨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 당첨자 배우자의 세대원(직계존비속에 한함)이 되는 자는 기당첨자의 당첨일로부터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구 분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전용면적 85㎡이하	당첨일로부터 3년	계약일로부터 1년(단,1년이내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등기 완료시점에 1년이 지난 것으로 봄)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지역개발과 16471호(2009. 05. 2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71-1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15층 9개동 총6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31,843.9㎡ 중 아파트 지분 30,838.1㎡, 상가 지분 1,005.8㎡)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전체 620세대)**

(단위 : 면적-㎡, 금액-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 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면적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전용	계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대지 지분(㎡)	최고 층수	층별	공급세대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200900 0309(01)	36130-01	84.9206A	84.9206	30.4706	115.3912	2.7453	33.326	151.4625	51.6783	11 ~ 15	1	173	9
												2		12
												기준층		152
	200900 0309(02)	36130-02	84.9206A1	84.9206	37.2385	122.1591	2.7453	33.326	158.2304	51.6783	12 ~ 15	1	129	6
												2		9
												기준층		114
	200900 0309(01)	36130-03	84.9724B	84.9724	29.8037	114.7761	2.7469	33.3463	150.8693	51.7098	13 ~ 15	1	168	8
												2		12
												기준층		148
	200900 0309(01)	36130-04	71.6893C	71.6893	21.5021	93.1914	2.3175	28.1335	123.6424	43.6264	15	1	150	10
												2		10
												기준층		130

주택형(㎡)	동 별	층별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국민 주택기금	계약금 1차(5%) 계약시	2차(5%) '09.06.15	중도금 1차(30%) '09.07.10	2차(5%) '09.08.10	잔금(입주지정일)
84.9206A	102동 5,6라인 103동 1,2,3,4라인 106동 1,2,3,4라인 107동 5,6라인	1층	12,971	134,129	147,100	80,000	7,355	7,355	44,130	7,355	80,905
		2층	12,971	141,129	154,100		7,705	7,705	46,230	7,705	84,755
		기준층	12,971	150,329	163,300		8,165	8,165	48,990	8,165	89,815
84.9206A1	101,102동 1,4라인 105동 3라인 107동 1,4라인 108동,110동 3라인	1층	12,971	134,129	147,100	80,000	7,355	7,355	44,130	7,355	80,905
		2층	12,971	141,129	154,100		7,705	7,705	46,230	7,705	84,755
		기준층	12,971	150,329	163,300		8,165	8,165	48,990	8,165	89,815
84.9724B	101,102동 2,3라인 105,110동 1,2라인 107동 2,3라인 108동 4,5라인	1층	12,979	134,121	147,100	79,900	7,355	7,355	44,130	7,355	80,905
		2층	12,979	141,121	154,100		7,705	7,705	46,230	7,705	84,755
		기준층	12,979	150,321	163,300		8,165	8,165	48,990	8,165	89,815
71.6893C	108동 1,2라인 109동 1~6라인 110동 4,5라인	1층	10,950	106,750	117,700	63,900	5,885	5,885	35,310	5,885	64,735
		2층	10,950	112,350	123,300		6,165	6,165	36,990	6,165	67,815
		기준층	10,950	118,850	129,800		6,490	6,490	38,940	6,490	71,390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 하여 책정한 금액임.
* 101동 101호, 102동 106호, 105동 101호,102호,103호, 106동 104호, 107동 101호,102호,103호,106호는 피로티로 되어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당사의 중도금대출이 중도금납입기일까지 대출이 안되거나,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 또는 대한주택보증㈜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고,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간 전매금지되며,(단,향후 주택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3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대원 전원 포함)에 속한 분은 1순위 청약이 불가(2순위 청약가능)하며, 상기 요건 및 무주택 요건을 위반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선정될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상기주택은 84.9206A형과 84.9206A1형은 세대당 80백만 원, 84.9724B형은 세대당 79.9백만 원, 71.6893C형은 세대당 63.9백만 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 되어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입주일(입주예정일 이후 입주시는 입주지정종료 익일)로부터 대환전일 까지 기간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이자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위에 표시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액은 입주시 분양대금의 잔금으로 대체되므로 고객님께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총공급금액에서 국민주택기금대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원하지 않는 분은 기금대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우리은행 명의의 잔금수납계좌 (우리은행 압구정현대지점 1006-800-065397, 전화번호 02)542-2801)로 입금하여야 하며, 업체앞 직접 현금납부 또는 잔금수납계좌 이외의 타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은행에 확인요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일반공급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 05. 29)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당해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당해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 하여야 청약 가능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당 주택에 공급 신청할 수 없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
•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1순위	공통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포함]에 속한 분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포함),본인 또는 세대원중 만60세미만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에 속한분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 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 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2주택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됨
		전 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각주택형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 1년 이 경과 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액을 24회 이상 불입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을 소유[청약자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2순위 전 주택형	공통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됨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3순위	전 주택형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

구분	순위	거주 구분	접수 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1순위	완주군/전라북도	1순위 : 2009. 06. 03(수) 2순위 : 2009. 06. 04(목)	인터넷 : www.apt2you.com 단,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www.kbstar.com 접수시간 : 08:30~18:00	- 일시 : 2009. 06. 11(목) 오후 15:00 - 장소 : 당사 주택홍보관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전화문의는 대화 착오 가 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2순위				
	3순위	전라북도	2009. 06. 05(금)	접수장소 : 당사주택홍보관 및 우리은행본지점 접수시간 : 09:30~16:00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 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 자격이 일치 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청약 가능시간 : 09:00~16:00 단,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3순위는 당사 주택홍보관에서만 가능]

■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 신청가능 주거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이미 신청가능 적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신청 가능 적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주거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 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9. 05. 29)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1년미만인 자는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 05. 29)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접수 방법**
• 층별 · 동별 ·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완주군,전라북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신청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경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 · 2순위 :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제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5%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1순위 청약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됨.
•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 청약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 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1년미만	2	8년이상 ~ 9년미만	18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증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이상 ~ 2년미만	4	9년이상 ~ 10년미만	20	
		2년이상 ~ 3년미만	6	10년이상 ~ 11년미만	22	
		3년이상 ~ 4년미만	8	11년이상 ~ 12년미만	24	
		4년이상 ~ 5년미만	10	12년이상 ~ 13년미만	26	
		5년이상 ~ 6년미만	12	13년이상 ~ 14년미만	28	
		6년이상 ~ 7년미만	14	14년이상~15년미만	30	
		7년이상 ~ 8년미만	16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 자동계산 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 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합 계			84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6조 제③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따른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저가주택" 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 8. 3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한다. 다만,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 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 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적용 기준
1) 일반기준
- 가점제 점수는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2) 가점점수 산정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소유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이나,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은 없음.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 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 초과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 보유특례)
① (현재 :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현재 소형 · 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②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주택의 처분 일에→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 이라한다)중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 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 가격으로 봄)

■ **인터넷 신청접수 방법**

구 분		국민은행(구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야통장을 가입하신분
이용대상	공통	※1,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인터넷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절차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에 접속 -) 부동산-)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인터넷청약(www.apt2you.com)에 접속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노약자 · 장애우 등 인터넷 취약자 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현장비치) ※청약예금 또는 부금통장(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구성시 : 주민등록등본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장)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생략 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300만원	※ 창구청약자:신청금액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환불장소		환불시 구비사항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이후 (2009. 06. 12부터 환불가능 평일 09:00 ~ 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청약자 본인의 계좌에 한함	본인,배우자환불시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제출) ※ 주민등록증 ※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배우자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로 한함)
		제3자 대리환불시	상기구비서류 외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1통 [단,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위임시 제출생략) ※ 제3자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위임장

• 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로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우리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분	신청방법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 ·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단,1순위 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가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또는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는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2009.06.12(금)까지 주택홍보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 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으로, 2009. 06. 16(수) 당사주택홍보관내에 동 · 호수 배정 추첨 등 공급방법을 게시할 예정임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사용이 불가함.
• 예비당첨자 공급 이후 잔여세대의 선착순 임의공급 방법은 2009. 06. 16(수) 예비당첨자 공급방법 게시일에 당사 견본주택 내에 별도로 게시할 예정임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 정당당첨자 : 2009. 06. 17(수) ~ 2009. 06. 19(금) (3일간, 시간09:30 ~ 16:0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일반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수 있는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1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제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601-460048	라송산업㈜ 외1인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우리은행 본 · 지점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에 따라 입주 전에 사업주체의 통보일정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09년 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계약시 구비사항
정당당첨자	내국인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 · 초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또는 서명인증서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받은 자	특별공급 및	• 주택소유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1순위 당첨자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당첨금지 등부적격자	• 재당첨 금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견본주택에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단, 주민등록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9.05.29)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등**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관리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에 한함)
- 1, 2, 3순위 당첨자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임대주택(임대기간 완료 후 분양하는 임대주택)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은 자 제외)가 당첨되는 경우 당첨 분양주택의 입주 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전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 받을 경우에는 새로 공급받은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됨(단, 임대계약 만료가 분양주택의 입주 시점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 만료시점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 가능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거)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에 준함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 ARS당첨확인서비스 이용방법**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이용기간	2009. 06. 11 ~ 2009. 06. 20 (10일간)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 701]	전자금융 공동망(1369) [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2009. 06. 11 ~ 2009. 06. 20 (10일간)	
휴대폰문자 서비스	대 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09. 06. 12 09: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문고, 보육시설, 주차장 등

■ **융자안내**
• 사업주체에서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시는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투기지역의 중도금 대출 제한비율 강화 및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기로 함.
• 본 주택은 지방공공택지 분양아파트로 당해 주택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향후 주택법령 개정내용에 따라조정 될 수 있음), 매수인의 공급대금 중 일부를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총 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배제되며, 주택담보 인정 비율(LTV)이 상향적용 받게 됨.

■ **분양가 내역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규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음[적용면적 85㎡ 이하]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율	구 분				금 액	비율
합 계				95,358,800,000	100%	공사비	건축	27	지붕 및 홈통공사	18,600,000	0.02%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6,646,607,583	6.97%			28	창호공사	2,278,000,000	2.39%
	기간이자			754,293,448	0.79%			29	유리공사	644,870,000	0.68%
	필요적경비			339,412,105	0.36%			30	타일공사	1,193,880,000	1.25%
	그밖의 비용			-	0.00%			31	돌공사	1,028,900,000	1.08%
공사비	토목	1	토공사	1,671,158,450	1.75%			32	도장공사	549,000,000	0.58%
		2	흙막이공사	-	0.00%			33	도배공사	347,600,000	0.36%
		3	비탈면보호공사	-	0.00%			34	수장공사	1,467,850,000	1.54%
		4	옹벽공사	132,000,000	0.14%			35	주방용공사	1,389,390,000	1.46%
		5	석축공사	-	0.00%			36	잡공사	354,780,000	0.37%
		6	우 · 오수공사	620,820,000	0.65%		기계 설비 공사	37	급수설비공사	524,650,000	0.55%
		7	공동구공사	-	0.00%			38	급탕설비공사	728,640,000	0.76%
		8	지하저수조및급수공사	23,870,000	0.03%			39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716,890,000	0.75%
		9	도로포장공사	358,160,000	0.38%			40	위생기구공사	986,430,000	1.03%
		1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47,755,000	0.05%			41	승강기계공사	946,500,000	0.99%
		11	정화조시설공사	-	0.00%			42	난방기계공사	846,510,000	0.89%
		12	조경공사	2,869,800,000	3.01%			43	가스설비공사	627,850,000	0.66%
		13	부대시설공사	286,530,000	0.30%			44	자동제어설비공사	453,640,000	0.48%
	건축	14	공통가설공사	1,719,200,000	1.80%			45	특수설비공사	405,920,000	0.43%
		15	가시설물공사	1,910,220,000	2.00%		기타 공종 (3)	46	전기	5,253,100,000	5.51%
		16	지정 및 기초공사	2,292,260,000	2.40%			47	정보통신	1,838,586,000	1.93%
		17	철골공사	-	0.00%			48	소방설비	2,878,640,000	3.02%
		18	철근콘크리트공사	30,292,560,000	31.77%		기타 공종 (2)	49	일반관리비	2,106,000,000	2.21%
		19	용접공사	-	0.00%			50	이윤	3,725,096,254	3.91%
		20	조적공사	477,550,000	0.50%	간접비	설계비			414,410,000	0.43%
		21	미장공사	2,148,000,000	2.25%		감리비			1,377,439,160	1.44%
		22	단열공사	175,450,000	0.18%		일반분양시설경비 등			418,600,000	0.44%
		23	방수 · 방습공사	889,750,000	0.93%		분담금 및 부담금			103,450,000	0.11%
		24	목공사	2,187,000,000	2.29%		보상비			836,000,000	0.88%
		25	가구공사	1,549,640,000	1.63%		기타사업비성 경비			1,767,000,000	1.85%
		26	금속공사	859,640,000	0.90%	그밖의비용(1)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878,902,000	0.92%

☞ 공개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용
② HOME/NETWORK 설치비 : 700,000,000원
③ 에어컨 냉매배관 :178,902,000원
※ 법적근거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별표 1 [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
- 5. 인텔리전트설비 (홈네크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으로 한정한다) 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공사비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거 기술용역업체로 신고된 업체에서 산출한 공사비

구분	세대당 금액(원)	산정 금액(원)	비 고
홈네트워크	1,129,032	700,000,000	
에어컨 냉매배관	288,552	178,902,000	
계	1,417,584	878,902,000	

※ 상기 항목별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기타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단지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야 함.
* 동일한 청약예금 등으로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하며, 신청자는 당첨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및 해약이 불가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3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이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본 주택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처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로도 이행하여야 함.)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절 ·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에 따라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샘플하우스)은 일정기간 공개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별도로 통보될 예정으로 공급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됨.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주거공용면적은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단지 내 주민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상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될 것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를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를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람.
* 어린이 놀이터 및 옥외 운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일조량이 감소(침해)될 수 있음.
* 인접도로에 의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면적확장에 따른 정산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및 단지 외부의 공개공지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은 풍동 실험결과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천연자재(무늬목, 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취득하여야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확장형 발코니 공사비**

(금액단위 : 원/VAT별도)

주택형(㎡)	84.9206A	84.9206A1	84.9724B	71.6893C
공사비	7,000,000	7,000,000	8,800,000	6,200,000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금액단위 : 원/VAT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 소방감리
회사명	㈜신화엔지니어링	㈜일신전기감리	㈜한국전설엔지니어링
감리금액	929,962,000	337,477,160	110,000,000

■ **시행자 및 시공자**

구분	시행사	시공사
회사명	라송산업㈜(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주택2003-0231)	㈜한토건설(건축공사업사업자등록번호 : 건축공사업 01-1586)

◈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 임.**

■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제012222009-101-0001300 용지번호 제012339호	42,911,46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주택분양 보증 계약에 따라 사업부지 등기부 등본에는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증대상 제외사항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부위, 기타 마감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조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으로 문의바랍니다(전화 02-3771-6465)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71-1 (전주과학센트럴카운티 단지내 상가) ☎(063) 262-8701~3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 및 의문사항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